

Cambridge 공립 학교

159 Thorndike Street, Cambridge, Massachusetts 02141

Cambridge 공립 학교

권리 및 책임 안내서

목차

항목	페이지
1.0 정책	1
2.0 출석	2
3.0 개인에 대한 수색	4
4.0 학생 사물함	7
5.0 신체의 자유	7
6.0 표현의 자유	9
7.0 집회의 자유	11
8.0 학교 시설의 이용	11
9.0 복장 규정	11
10.0 종교의 자유	12
11.0 학생의 결혼 및 임신	12
12.0 학생 자치 기구	12
13.0 징계 정책 및 절차	13
14.0 정학	14
15.0 긴급 정학	22
16.0 정학 협의	22
17.0 정학에 대한 이의 제기	24
18.0 특수 교육 징계 절차	25
19.0 퇴학 정책 - 무기, 약물 및 폭력	29
20.0 학교 밖에서의 행위	37
21.0 퇴학	38
22.0 자퇴	40
23.0 권리의 박탈을 시정하기 위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	40
24.0 학생 지침서	42
첨부 A	43

권리와 책임

Cambridge 공립 학교 학생 규범

1.0 정책

- 1.1 교육위원회는 관할 학생들의 행동 지침 규정을 작성 및 공고해야 합니다.
- 1.2 규정에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a. "학생"은 취학 연령에 해당되며, Cambridge 교육위원회 관할 하에 있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합니다.
 - b.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하며, 단 18 세 이상인 학생은 서면으로 이 규정의 모든 권리 및 조항을 자신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3 모든 사람은 교육위원회의 서면 규정을 전제로 Cambridge 의 공립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1.4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명시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관리자, 교직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학생에게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내려진 징계 처분은 무효입니다.
- 1.5 규정 사본은 규정의 적용 시점 및 매 학년 시작 시점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 및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됩니다.
- 1.6 규정의 최종 채택 및 공고, 또는 개정 전에 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가 열리기 최소 일주일 이전에 교육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시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들에게 제안된 규정들에 대한 사본을 제공하고 공청회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시내에

보급되는 신문을 통하여 공청회에 대해 공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규정의 최종 채택 전에 공청회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들의 최종 채택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1.7 어떠한 규정 또는 개정안도 교육위원회가 채택, 공고하여 학교 커뮤니티에 배포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1.8 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은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는 공립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 1.9 Cambridge 공립 학교의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및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교직원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해당 상황을 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는 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행정 절차”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2.0 출석

- 2.1 규칙적이고 꾸준한 출석은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의 성취를 증가시키는 것과 서로 존경하는 학교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과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에 필수적입니다. 출석 방침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항상 매일 학교에 오고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것은 학교와 매일 학교 학습에 적어도 95% 참석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유없이 학교에 무단 결석하고, 잦은 결석 또는 지각을 하는 학생은 이 방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a. 학부모/보호자는 결석을 그날 아침이 지나기 전에 학교에 전화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b. 전화로 결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나 의사로부터 결석 이유를 설명한 사유서를 그 다음 등교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시간 중에 사유서를 받아 오라고 학생을 집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 c. 병으로 자주 또는 불규칙적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 학교 교장이 그러한 결석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d. 장기적인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학부모/보호자는 교장과 연락하여 학사 요구 일정을 마치기 위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 e. 무단 결석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학생은 안전경비부에 보고됩니다. 안전경비부의 부장은 관련된 교장과 상의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응안 중에는 학생이 법원의 지도 하에 다른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되면 미들섹스 구역 법원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개인적인 충격에 의한 결석: 집안의 초상
- b. 종교 공휴일
- c. 학교 시간 중에 갈 수 밖에 없는 병원이나 상담 방문
- d.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적인 방문
- e.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 받은 정학처분
- f. 학교와 관련된 여행, 모임 또는 회의
- g. 대학교 순방 (고등학교 3학년엔 이틀, 4학년엔 3일)
- h. 고등학교 동안에 5일을 넘지 않는 여행이나 교육적 경험에 의한 결석

허락되지 않는 결석들은:

- a. 학교 또는 개별 교실 또는 자습실로부터의 무단 결석;

- b. 교장에게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여행;
- c. 교장에게 사전 승인 받지 않은 구직활동;
- d. 어떤 학과목의 시험을 회피하거나 시험 공부를 위하여 집에 머무르는 것;
- e. 교장실에 보고하지 않고 수업 시간 중 학교 건물을 이탈하는 행위;
- f. 늦잠이나 다른 이유로 지각하는 것 (이유없는 세번의 지각은 한번의 이유없는 결석으로 간주함);
- g. 수업에 참가하지는 않으면서 학교 구내 또는 주변에 머무르는 행위;
- h. 기타 이유없는 결석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학부모/보호자의 전화가 없거나 결석 후 등교했을 때 학부모/보호자의 사유서나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 오지 않는 경우.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해당 학생은 전체 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감독하에 있으며, 조퇴를 하려면 교장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실의 허락 없이 조퇴를 하는 경우는 무단 조퇴로 처리되며, 빠진 수업 활동 또는 과제에 대해 학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 교사는 학생의 결석이나 지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수업 시작 시간 후에 교실에 들어온 학생은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아무런 이유없이 다섯번 지각하거나 5 일이나 오전 수업날 열흘 결석하면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런 결석이나 지각 기록은 학생이 등록한 학교의 교장이 학교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학교나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 방침에 따라서 수업 시간의 과제물을 보충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5 일 이상 결석해야 할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연락을 하여 집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2 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이를 학교에 통보하여 가정 학습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설명없이 결석이나 지각을 하면 벌칙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학교 당국은 무단 결석, 지각 또한 수업 빠지는 학생을 돕기위해 정학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다른 적절한 벌칙 방법을 고려하는데, 청소년 법정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습적 무단 결석 학생으로 의뢰하거나 또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인가의 검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결석, 지각이나 수업 빠짐으로 학습을 못 할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을 보충하고 수업에 다시 참석했을 때 빠진 숙제를 할 적당한 시간을 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종교 휴일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결석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편견적인 또는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면 안됩니다. 교사들은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종교 휴일 동안에 중요한 시험이나 교외 활동이나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캠브리지 린지와 라틴 학교 및 고등학교 연장 프로그램은 어느 수업이나 네번 (4)의 결석이 있으면 그 사분기 수업의 출석 위반에 의한 낙제 (Attendance Violation Failures: AVF)로 처리합니다. 네번째 이러한 결석이 있는 후 학부모/보호자에게 AVF를 통보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장기 질환, 재발되는 병 또는 다른 병으로 나흘 (4 일) 이상 결석할 때는 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AVF가 발행된 10 일 이내에 캠브리지 린지와 라틴 학교나 고등학교 연장 프로그램의 재심 위원회에 어떠한 AVF라도 재심 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만일 재심에서 거부가 되면 그 거부된 10 일 이내에 재심 요구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3.0 개인에 대한 수색

미국 수정헌법 제 4 조에 따르면 공립학교 관리자 또는 교사는 학생을 부당하게 수색 또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프라이버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색은 그 시점에 수색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교 규정이나 법 위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또한 수색의 범위가 합당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1 **K-8 학년:** 교장, 교감,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 또는 기타 학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수색 및 심문을 인가해야 합니다.

9-12 학년: 교장, 교감, 학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에 의한 수색을 인가해야 합니다.

3.2 **전체 학년(K-12):** 교장, 교감, 학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가능한 경우, 학교 또는 작은 교육 공동체에 어떤 경비 직원이 파견될 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K-8 학년:** 교장, 교감,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 또는 기타 학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수색 및 심문에 배석해야 합니다.

9-12 학년: 교장, 교감,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 또는 기타 학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수색에 배석해야 합니다.

3.4 **K-8 학년:** 학교 경비에 의한 심문에 대해 가능한 학생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이 배석해야 합니다. 학교 경비에 의한 학생에 대한 수색은 학생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9-12 학년: 학교 경비에 의한 학생에 대한 모든 수색은 학생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3.5 **K-8 학년:** 교장, 교감,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에 의한 학생에 대한 수색 전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신을 당일 발송해야 합니다.

"비상 연락자"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명한 개인으로, 심문 또는 수색을 포함한 징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연락할 사람을 말합니다. 매 학년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심문 또는 수색을 포함한 징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연락할 사람을 지정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해당 비상 연락자는 심문 또는 수색을 포함한 징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리해야 합니다.

9-12 학년: 교장, 교감,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에 의한 수색 완료시 이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또한 이에 대한 서신을 당일 발송해야 합니다.

- 3.6 **K-8 학년:** , 교감,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교 경비에 의한 심문시 이를 사전에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또한 이에 대한 서신을 당일 발송해야 합니다.

9-12 학년: 학생에 대한 심문시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3.7 **K-12 학년:** 모든 학생들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또는 초등학교 또는 CRLS 학생 안내서를 통하여 심문 및 수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합니다.

- a. 교육, 징계 또는 기타 학교 관련 문제에 대해 학생은 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의 지시로 언제든지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 학생이 수색에 동의한 경우, 또는 수색으로 인해 학교 규정의 위반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는 합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학생은 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에 의해 수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K-8 학년의 학생에 대한 심문 또는 수색에 안전 및 보호국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비상시를 제외하고, 이러한 수색 또는 심문에 대해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동일한 성별의 성인과 학교 운영 대표가 참석해야 합니다. 비상시를 제외하고, Cambridge Rindge and Latin School 의 학생에 대한 사회안전국의 수색 시에 소속된 학생과 동일한 성별의 성인과 학교 운영 대표가 참석해야 합니다.

- 3.8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3.0 장 및 CRLS 학생 안내서에 사용된 것과 같이 “심문” 및 “수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심문"이란 학교 교육, 징계 또는 기타 학교 관련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질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이란 학생의 지갑, 가방 또는 주머니를 포함하여 학생의 물건 또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에는 학생의 몸을 더듬어 검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3.9 교육감 및 최고 운영 책임자는 학교 경비에 의한 학생에 대한 수색이 있을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통보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현재 제공되는 보고서와 함께 학교 경비에 의한 수색과 관련하여 월간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 3.10 "독립 수사"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의 위협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단순한 사고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지역 내 하나 이상의 학교 또는 CRLS 학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의 학교 하나 이상이 포함된 "독립 수사"는 교육감 및 최고 운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독립 수사에 하나 이상의 작은 학교만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교장의 승인만이 요구됩니다.

4.0 학생 사물함

- 4.1 학생의 사물함은 해당 사물함에 금지 품목 또는 사물함에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학교 건물 또는 그 안의 사람들에 대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색을 실시하는 사람은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 이어야 합니다. 사물함은 교육구의 재산이므로 교육구는 사물함을 수색할 권한을 갖습니다.
- 4.2 금지 품목으로 판단되는 모든 물건은 이를 제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사물함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물함은 폐쇄되며 교장은 이를 즉시 통보 받아야 합니다. 건물 안전 및 보안 계획에 금지 품목의 이동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인 물품은 학년 말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Cambridge 교육구는 학교 종료일 이후 사물함에 남아 있는 물품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3 학생 사물함의 마스터키와 복사 키는 교장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발급한 자물쇠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물쇠는 학생의 부담으로 제거됩니다.
- 4.4 학생은 무기, 불법 약물 또는 관련 장비, 술, 장물, 기타 금지 품목 또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용할 합당한 용도가 없는 물품을 사물함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4.5 제 4.1 항 에서 4.4 항까지는 학생의 책상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학생의 사물함 및 책상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된 검사 또는 불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사물함 및 책상을 수색할 권리를 갖습니다.

5.0 신체의 자유

- 5.1 학생은 학교 건물 및 학교 구내에서 또는 등하교 중에, 그리고 승인된 모든 학교 활동 중에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5.2 학생,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는 부상을 발생시키는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부상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의 압수
 - b. 자기 방어
 - c. 다른 사람 또는 재산의 보호

- 5.3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는 학생에 대한 징계 또는 체벌의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체벌도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5.4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또는 교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학생,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힐 수 없으며, 학생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수 없습니다.
- 5.5 괴롭힘에 대한 행동 규범 및 Cambridge 공립학교 정책

1964 민권법(Civil Service Rights Act) 제 VI 장(인종, 성, 민족, 장애인, 국적 또는 성적 지향성) 및 매사추세츠 일반법(Massachusetts General Law) 제 265 장, 43A 조에 의거하여 희생자에 의한 모든 보호된 장소에서의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당국인 Office of Affirmative Action 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5.6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이란 언어에 의한 것이나 신체적인 것을 막론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는 특성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에는 다음 등이 포함됩니다.

- a. 개인 또는 단체를 모욕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그림을 전시하거나 회람하는 행위
- b.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두에 의한 모욕, 또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 그 면전에서 이루어진 구두에 의한 모욕.

5.7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접근, 성적 요구, 구두에 의한 또는 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a. 성적 접근, 요구 또는 행위를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고용, 학교에서의 지위, 학교 관련 기회를 조건으로 또는 고용 결정을 위한 기초로 감수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경우.
- b. 성적 접근, 요구 또는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성적으로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학업 또는 업무를 불합리하게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

5.8 위의 정의에 따라 교사, 감독관 또는 업무 또는 학교의 일정 지위에 있는 개인이 호의적인 평가, 급여 인상, 승진, 복리 증진, 지속적인 고용, 높은 성적, 추천 또는 기타 편익 제공 등의 직장 또는 학교의 편의를 실제 제공하거나 또는 약속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또는 암묵적인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의 정의는 넓습니다. 위의 예 이외에도 성별을 불문하고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학교 또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목적 또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지향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예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경우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의 예와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개별 행위 및 파급성을 포함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a. 신체적 접촉 여부와 관계 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접근
- b. 바람직하지 못한 추파, 휘파람, 신체 접촉, 성적 제스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급
- c. 성적 욕설, 암시, 농담, 성행위를 가리키는 글 또는 언어, 개인의 신체에 대한 언급, 개인의 성행위, 결핍 또는 능력에 대한 언급

d. 개인의 성행위에 대한 논의 또는 타인의 성 경험에 대한 질문

e. 성적인 암시물, 사진 또는 그림의 전시

5.9 교사, 학교 관리자 또는 교직원은 교육구 고위 직원에게 문제 및 이의를 제기하려는 학생을 위협하거나 단념케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5.10 이 규정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규정 제 23.0 장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6.0 표현의 자유

6.1 학생은 학교 환경에서 법원이 정의한 헌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말, 글, 복장 및 단추, 배지, 엠블럼, 완장 등 상징의 표시, 또는 기타 매체 또는 표현 형식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장이나 그 대행자는 특정한 형식의 표현이 학교 활동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로 야기할 수 있거나 야기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충분한 사실 근거가 있는 경우 표현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예, 외설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표현; 인종 차별을 지지하는 표현, 포르노적인 표현, 의도적으로 남을 자극하여 유효한 학교 규정을 위반하게 만드는 표현 등)

6.2 학생은 신문, 잡지, 전단, 팸플릿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문서도 학교 구내 및 학교 건물 내에서 배포 및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지 또는 배포가 학교 활동에 실질적인 방해로 야기할 수 있거나 야기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충분한 사실 근거가 있는 경우, 특정 출판물의 특정 호에 대한 학교 건물 내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인종 차별을 지지하는 문서, 불법 행동을 지지하는 문서, 약물 복용을 지지하는 문서 등)

6.3 교장, 교사, 학교 관리자 또는 교직원은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을 포함하여 배포전 승인을 위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모든 학생 출판물은

책임있는 언론의 법을 따를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적인 내용; 근거없는 고발이나 비난; 외설; 거짓 내용; 성별, 인종, 종교, 장애인, 국적이나 성적 지향성에 의한 편견이나 희롱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법과 학교 규율을 위반하는 것; 교육 과정을 방해하려는 내용은 허락되지 않는다. 표현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학생에 의한 어떠한 형식의 표현도 공식적인 학교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교장은 배포 시작 시점에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어떠한 문서도 배포를 금할 수 있습니다.

- 6.4 문서 배포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해 교장은 아래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 a.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
 - b.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 건물 내외에서의 배포를 금지하지 말 것
 - c. 배포가 금지된 장소 및 시간이 구체적일 것
 - d. 규정에 따라 배포되는 문서를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금지하지 말 것
- 6.5 학생은 국기에 대한 경례 또는 충성 맹세의 복창을 강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정중하게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 6.6 교장 또는 교장이 승인한 자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플래카드, 전단 또는 게시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6.7 이 규정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규정 제 23.0 장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7.0 집회의 자유

- 7.1 학생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기획한 집회는 교장 또는 교감이 사전 승인한 시간 및 장소에서 열려야 하며, 집회에 대한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 7.2 학생은 외부의 연사를 학교에 초빙하여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연설 시간 및 장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충돌을 방지하고 학교 커뮤니티의 올바른 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사전 승인을 위하여 교장 또는 교감에게 외부 연사의 이름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교감은 해당 연사가 학교 활동에 실질적인 방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사실 근거가 없는 한 외부 연사를 승인해야 합니다.
- 7.3 이 규정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규정 제 23.0 장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8.0 학교 시설의 이용

- 8.1 학교 관리자는 회의, 집회, 발표 준비, 발표 등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학생들이 이 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한 재료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기타 비용 및 손상에 대해서도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규정 제 23.0 장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9.0 복장 규정

- 9.1 학생들은 보건, 안전 및 청결 기준에 부합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복장 및 헤어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 9.2 항상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9.3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방해하는 복장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복장에는 배를 드러내거나, 짧은 바지, low-slung 바지(골반 바지), 기타 허용되는 복장 기준을 위반하는 복장 등이 포함됩니다.
- 9.4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복장 및 액세서리의 착용이 금지됩니다.
- a. 외설적이고 음란한 문구 또는 그림이 있는 복장 및 액세서리
 - b. 특정 단체, 성, 인종, 종교, 장애인, 국적 또는 성적 지향성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방향으로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복장 및 액세서리
 - c. 술, 담배 또는 불법 약물을 홍보하는 복장 및 액세서리
- 9.5 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한 학생은 복장을 바꾸도록 귀가시키며 학부모/보호인에게 통지됩니다.
- 9.6 이 규정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규정 제 23.0 장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10.0 종교의 자유

- 10.1 학생들은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10.2 반대의사를 가진 학생에게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는 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정상적인 교과과정의 일부로서 종교적 주제에 관련된 토론 또는 종교 음악의 연주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11.0 학생의 결혼 및 임신

- 11.1 학생은 결혼, 임신 또는 양육을 이유로 수업 또는 과외 활동 참여를 거부당하거나 정학, 퇴학 또는 기타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1.2 이 규정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규정 제 23.0 장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12.0 학생 자치 기구

- 12.1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기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정식 학생에게는 학생 임원의 투표, 선출 및 유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자치 기구는 매년 선거를 통해 구성됩니다.
- 12.2 학생 임원의 지정 및 선출 절차는 학교 관리자, 교사 또는 교직원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제정 및 이행해야 합니다.
- 12.3 학생 임원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 12.4 학생 자치 기구의 조직, 절차 및 권한은 학생들이 작성 및 채택한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단, 학생 자치 기구는 특정 이익을 가진 소수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자치 기구 내에 이들 그룹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13.0 징계 정책 및 절차

13.1 일반 절차

교육위원회 및 모든 학교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징계처분 없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학 처분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관계자는 정학 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3.2 기타 적절한 예방 징계 조치

정학 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장 및 교장이 지정한 자는 아래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의 교육 및 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 a. 학생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문제의 원천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
- b.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부모/보호자, 또는 필요시 친구들과 의논
- c. 학교 상담교사 또는 심리학자의 의견 참조
- d. 외부 사회 기관의 의견 참조
- e. 위에 언급한 모든 대상과의 협의
- f. 교장의 의견 참조
- g. 개별 또는 단체 상담
- h. 정규 수업 이외에 강사 배정
- i. 추가 과제 부여
- j. 정규 수업 이후 추가 학습 요구
- k. 검사 시에 학생을 해당 주 및 연방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간주
- l. 필요 시 이틀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급에서 분리

14.0 정학

- 14.1 Cambridge 교육구의 정책은 극단적인 징계 처리 없이 학생의 품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행동이 학교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롭거나 또는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4.2 징계 처분을 시작하기 전에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모든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 학교 통학 서비스 또는 학교로부터 최대 10 수업일 동안의 정학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방과 후 교내 대기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i. 징계 처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ii. 학생의 행위에 대한 증거 설명

iii.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

b. 학교로부터 10 일 이상의 정학 처분을 내리거나 퇴학 조치를 내리기 전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i. 징계 처분에 대한 서면 통지

ii. 학생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청회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iii. 공청회 준비를 위한 적절한 기회

iv. 공청회에서 질의할 권리

v. 결정 사항에 대한 이유를 포함한 즉각적인 서면 통지

주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 전에 개별 교육 계획에 따른 추가 절차 및 제 18.0 장에 명시된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c. 학생이 학교 관리자, 타 학생, 직원, 자신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거나 또는 학교 환경을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정학 및 공청회 통지는 학생에게 학교를 떠날 것을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예외의 경우 공청회는 연기되며 합당한 기간 내에 열려야 합니다.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상황 검토에 있어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학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학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참작 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교장은 학생이 학교 건물, 학교 구내에서, 등하교 중에, 또는 승인된 모든 교내외 학교 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규정의 위반에 대해 1~10 일 간의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4.3 아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1~10 일 간 정학 처분이 내려집니다.

- a. **폭행 및 구타/신체적 위해/위협**

- i. 폭력, 무력, 강압, 위협, 협박,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
- ii. 위협, 괴롭힘, 강압 등을 통한 학교 관계자 또는 학생에 대한 방해, 또는 물리력 또는 폭력을 통한 학교 활동에 대한 방해
- iii. 무기 또는 위험 물질을 이용한 교직원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는 행위
- iv. 성폭행을 포함한 폭행, 또는 교직원 또는 타인을 폭행 및 구타하는 행위
- v. 교직원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는 행위

vi. 무력, 폭력, 또는 무력 또는 폭력 위협을 통해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무력 또는 폭력 사용의 위협은 충분히 피해자를 신체적 상해의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외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집단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b. *화기, 위험한 무기, 위험한 물건의 소유*

- i. 화기 또는 무기를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
- ii. 칼 또는 기타 법으로 금지하는 무기를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
- iii.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방법으로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c. *규제 약물, 술 및 담배*

- i. 규제 약물 또는 술을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 영향하에 있는 경우
- ii.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관할 지역 내에서 처방 또는 비처방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경우, 또는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 iii. 비처방 규제 약물, 수면제, 환각제, 각성제, 진통제, 마리화나, 술 또는 기타 중독성 약물을 소지했거나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 iv. 학교 부지에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 중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 내에서 담배 제품 사용이 발각된 경우
- v. 학교, 학교 구내에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 또는 행사를 포함하여 학교 관할 구역 내에서 규제 약물 또는 술을 전시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 vi.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 또는 행사를 포함하여 학교 관할 구역 내에서 규제 약물, 비처방 규제 약물, 수면제, 환각제, 각성제, 마리화나, 술 또는 기타 중독성 약물을 판매, 배포, 사용 또는 소지에 참여한 경우

d. *괴롭힘, 차별 및 시민권의 침해*

- i.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ii.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차별 등의 행위
- iii. 지속적으로 또는 공격적인 태도로 욕설, 모독적인 발언, 또는 외설적인 말을 사용하는 행위
- iv. 집단 괴롭힘을 금지하는 매사추세츠법(M.G.L. c. 269, §§17-19)을 위반하는 행위
- v. 학교 구내에서 또는 교내외 학교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
- vi. 학교 구내에서, 학교 활동 중, 또는 학교와 관련된 행사 중에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하거나 경멸적인 언어 또는 동작을 사용하는 행위

e. *절도, 파괴 및 방화*

- i. 학교 건물 또는 재산을 방화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 ii. 학교 재산에 대한, 또는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운송 도중 방화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iii.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 상황이 아님을 알고도 경보를 울리는 행위
- iv. 학교 또는 개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훔치는 행위

- v. 무력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을 통해 개인의 재산의 탈취를 기도하는 행위
 - vi. 학교 구내에서 타인의 개인 재산을 손상하거나 훔치는 행위, 또는 도난당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vii. 학교 재산을 손상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행위, 또는 학교 재산을 훔치거나 이를 기도하는 행위
 - viii. 허위 경보를 올림으로써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행사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행위
 - ix. 허위 경보를 올림으로써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x. 폭발물이 있다고 위협하거나 이와 유사한 허위 위협을 하는 행위
- f. *기타 방해*
- i. 학교 기능 또는 기타 교육 상의 모임 또는 기능, 기타 학교 내에서의 법적인 모임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이를 기도하는 행위
 - ii. 자신의 공무를 법적으로 수행하는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교육 또는 기타 학생들을 방해하는 행위
 - iii. 매사추세츠 주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통해 학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iv. 학교, 교실 또는 교실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v. M.G.L.c. 71, §§37H & 37H½을 위반하는 행위

vi. 학교 재산,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 또는 행사에 학교 환경에 맞지 않는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vii. 학교 환경에 맞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학교, 교실 또는 교실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행위

g. *위반 행위의 재발*

i.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명시된 규정 및 책임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반 행위의 재발

교장은 정학 공청회에서 내려진 사실 및 합의를 상세히 검토하여 정학 처분을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 기간 중 학생은 학교 근방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학교 행사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4 학생의 폭력 및 싸움

싸움에 연루되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조장한 개인에 대하여 엄격하고도 즉각적인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어떠한 종류의 소란 행위도 절대로 묵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용 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연루 정도, 범주, 위반 횟수,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1 일에서 10 일 동안의 정학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지되고 학부모에게는 미들섹스 카운티 법정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통보됩니다. 상황에 따라 Cambridge 교육구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폭력 또는 폭력 및 구타에 대해 미들섹스 카운티 법정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은 현 상황을 학교 관리자에게 알림으로써 싸움을 피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 및 보안실(Office of Safety and Security)를 통한 학생-교직원 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관리자에 의한 특정 범주 및 수준의 징계 결정은 각 개별 사안의 상황에
기반하여 내려집니다.

범주 1:

소란/ 장난 싸움 / 난폭:

최초 위반: 1 일간 교내 정학. 부모에 통보.

두 번째 위반: 1 일간 교외 정학. 부모와 상담.

세 번째 위반: 3 일간 교외 정학. 부모와 상담.

범주 2:

선동/ 주동/ 자극:

언쟁 또는 싸움 장소에서 떠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아래
범주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초 위반: 2 일간 교외 정학. 부모에 통보

두 번째 위반: 5 일간 교외 정학. 학교 복귀 시 면담을 위해 부모 동반.
교장실에서 퇴학 공청회

범주 3:

폭력 및 구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행위는 경찰에 통보되며,
체포를 요구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 소송이 제기됩니다.

최초 위반: 5 일간 교외 정학. 부모와 상담.
형사 소송 제기. 경찰에 통보.

두 번째 위반: 10 일간 교외 정학. 교장실에서 퇴학 공청회
형사 소송 제기. 경찰에 통보.

범주 4:

싸움/ 상호 폭행 및 구타:

최초 위반: 3 일간 교외 정학. 부모와 상담.
학교 복귀 후 중재 권고.

두 번째 위반: 5 일간 교외 정학. 부모와 상담.
학교 복귀 후 중재 권고.

세 번째 위반: 10 일간 교외 정학. 교장실에서 퇴학 공청회

범주 5:

교실, 식당, 집회, 복도에서, 또는 이동시간 중 또는 교내 무도회 등에서의
싸움/상호 폭행 및 구타

(구두에 의한 또는 신체적인) 싸움은 특히 교내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발생하는 경우 격렬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것은 엄격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매우
파괴적이고 해로운 행위입니다. 예: 식당에서 점심시간 중, 수업 종료 또는 건물
입장 중, 무도회, 운동 경기 또는 기타 학교 모임 또는 관련 행사에서. 반복된 위반에
대해 교장의 검토 후 퇴학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 5 일간 교외 정학. 부모와 상담. 형사 소송 제기.

두 번째 위반: 10 일간 교외 정학. 교장실에서 퇴학 공청회

14.5 허위 경보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관련 행사 등을 방해하고 경찰 또는
소방서의 출동을 불러오는 허위 경보(즉, 폭탄 위협, 경보 장치 해제, 화재
경보 가동, 또는 기타 허위 경보)를 조작한 학생은 징계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의 기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내에 있는 사람들 및 소방 또는 경찰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위반: 10 일간 교외 정학. 교장실에서 퇴학 공청회

14.6 금연 정책

1993 년에 제정된 매사추세츠 주 교육개혁법 제 37H 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 지구의 교육감은 교사 및 학생의 품행에 대한 정책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 건물, 학교 시설, 학교 구내, 학교 버스에서 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금연할 것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운동 경기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교 구내란 각 학교 주위의 보도 연석까지 전체 부지를 말합니다. 특히 Cambridge Rindge and Latin School 의 구내에는 학생 정책에 대해 학교 구내로 간주되는 Cambridge 공립 도서관 부지가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위반에 대한 절차: 금연 교실은 금연 교육 그룹 및 금연 지원 프로그램(Tobacco Education Groups and Tobacco Assistance Programs : TEG/TAP)의 매사추세츠 금연 센터에서 특별히 교육받은 학교 관계자(또는 학교 관계자가 지정한 자)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TEG 강의는 학생들에게 담배의 위험과 중독에 대해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휴교 기간 중에 열리는 3 일간의 교육(매일 한시간 반씩)에 참석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위반에 대한 절차: 금연 교실은 TEG/TAP 의 매사추세츠 금연 센터에서 특별히 교육받은 학교 관계자(또는 학교 관계자가 지정한 자)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TEG 강의는 학생들에게 담배의 위험과 중독에 대해 교육합니다.

최초 위반: 방과 후 3 일간(매일 한시간 반) TEG 강의 또는 5 일간 방과 후 교내 대기

위반 재발: 부모에 대한 통보 및 3 일간 TEG 강의 또는 5 일간 방과 후 교내 대기.

주: 사전 통보에 의한 교육 불참은 그 다음 주의 TEG 강의로 보충합니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교육 불참은 TEG 강의 보충과 더불어 하루 동안 방과 후 교내 대기 처분이 주어집니다.

교직원은 아래 절차에 따라 초등학생 또는 고교생을 TEG 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a. 학생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보고자는 Detention Report 양식에서 “did not attend(불참)”항목을 긋고 해당 란에 “smoking referral(금연 교육)”이라고 씁니다.
- b. 보고자는 보고서 원본을 학장/교장에게 보내고 사본 1 부를 지정된 TEG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학장/교장은 이를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 c. 학장/교장은 학생이 하루 1 시간짜리 TEG 강의 3 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보고받습니다.

15.0 긴급 정학

15.1 긴급 정학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생이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규정된 정학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고, 해당 학생을 계속 학교에 두는 것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학교 재산 및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해당 수업일 종료 시까지 즉각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5.2 긴급 정학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에게의 통지

긴급 정학을 승인하는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명한 대리인과 접촉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5.3 협의 일정

긴급 정학이 시작된 후 24 시간 이내에 교장은 아래 제 16.0 조에 의거하여 추가 정학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와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협의 결과 정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명시된 해당 위반에 대한 최대 정학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 정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협의 결과 부과된 추가 정학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6.0 정학 협의

16.1 학부모 통지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우선으로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과 접촉하여 결정된 정학에 대해 통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화 통화 및 서신의 배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학과 관련된 모든 서신은 영어 및 학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이 협의 참석 의사를 밝히면 협의는 참석을 허락하기 위하여 최대 다음날 종료 시까지 연기되어야 합니다.

16.2 협의 수행

협이는 관련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편견을 갖지 않은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협의에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이 협의 참관 또는 참석을 지시한 경우), 그리고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참관 또는 참석을 결정한 사람 등이 참관 또는 참석해야 합니다.

- a. 위반 사항.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위반 사항을 공표하고 학생이 공표된 위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b. 증인. 만약 학생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환됩니다. 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공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 (i) 발사체의 탄도 증거 또는 약물 분석 등 전문가에 의한 증언의 경우, (ii) 증인이 학생이고, 해당 학생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판단하는 경우.
- c. 협의 결과 M.G.L.c. 71, §37H½에 의거하여 무기 정학이 내려진 경우 제 20.0 장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16.3 정학 통보 및 이의 제기 권리

협의 후 24 시간 이내에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해당 학생이 제기된 정학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범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서신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통지는 영어 및 학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학생이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교의 규정에 대한 완전한 설명
- b. 학생의 정학 처분이 내려지게 된 행동에 대한 설명
- c. 정학 개시일 및 기간에 대한 설명
- d. 학부모/보호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에 교장이 참여하는 부모-학생-교사 협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
- e.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17.0 장에 의거하여 정학 통보 수신 후 15 일 이내에 학생이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

- f. 위반 사항이 퇴학 사유가 될 만큼 더욱 심각한 것일 경우 퇴학 공청회 일정이 잡혔음을 정학 기간 만료 이전에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설명.

17.0 정학에 대한 이의 제기

17.1 학부모/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그가 정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7.2 증거의 검토

- a. 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우선 공청회에서 제시된 증언을 요약하여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제공합니다. 그 후 학생, 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변호사 포함)은 증거 및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b. 학생은 공청회 내내 출석해야 하며, 위반 내용을 듣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모든 증거 내용을 듣습니다. 단, 학생의 심리적, 감정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 학생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심리교사의 동의에 따라 공청회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c.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는 공청회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학생의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학생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d. 공청회의 실시여부에 있어서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증거 규정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묶이지 않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을 소환하거나 질의할 수 있습니다.
- e.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공청회 진행을 조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자문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공청회

진행에 있어서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자문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둘 권리가 있습니다.

17.3 결정

- a.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결과를 기록하고, 그 사본을 학생의 기록에 포함시키며,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장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비제한적 방안이 시도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학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학생 기록부에 보관되지 않으며, 학생 기록부 규정(첨부 A)에 의거하여 이를 수신하도록 되어있는 자 이외에는 어떠한 문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학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학생의 즉시 복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b. 교장은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보완 작업에 대한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 c. 교육감이 공청회에 심리관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공청회 심리관으로 참석한 교육감이 지정한 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서면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감이 공청회 심리관으로 참석한 경우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20 장 내지 23 장에 명시된 기타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7.3 장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공청회 후 48 시간 이내에 결정문 사본을 학생,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상담자 또는 대리인, 교장 및 교육감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공청회 심리관을 맡지 않은 모든 경우에, 결정문에는 학생에게 공청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는 서면 통지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d. 학생이 공청회 심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공청회 심리관의 결정을 수신 후 5 수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요청을 수신하면, 검토자는 결정문 사본과 공청회 기록 검토를 위해 교육감에게 제공합니다. 공청회 기록은 학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서면 진술서 및 논점을 교육감에 제출하고 교육감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 교육감은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지 10 수업일 이내에 학생, 학부모/보호자, 학생 대리인, 교장 등에게 이전 결정의 유지, 파기 또는 변경 등의 서면 결정문이 우송되어야 합니다.
- f. 공청회, 이의 제기 또는 비공식적인 운영 결정에 따라 학생이 해당 위반 행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사고 및 징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학생 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심리관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해 서면으로 해당 사건 및 징계 처리에 관한 기록이 삭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g.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이름, 날짜, 기간, 사유 등이 명시된 정학 기록(즉, 일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 또는 가족의 신분은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18.0 특수 교육 징계 절차

18.1 연방 및 주 법에 명시된 대로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18.1.1 특수 관리가 필요한 각 학생들에 대한 개인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 IEP)은 학생이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명시된 정상적인 징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또는 학생의 특수한 관리 요구로 인해 본 규정 또는 학교의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교육 규정 또는 학교의 규정에 대해 필요한 변경은 IE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8.1.2 학생의 행동이 자신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TEAM 프로세스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 18.1.3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의거하여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장(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특수 교육 사무실(Office of Special Education)에 서면으로 IEP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또는 기타 학교 규정의 변경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정학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통보 기록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 18.2 특수 교육 사무실의 직원은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과 관련하여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따른 모든 행정적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18.2.1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의거한 행정적 결정이 학생의 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결정의 결과 연간 정학 처분 일수가 총 10 일 이하인 경우 TEAM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18.2.2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의거한 행정적 결정이 학생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결정의 결과 연간 정학 처분 일수가 총 10 일 이상인 경우,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TEAM 협의가 필요합니다.
- 18.3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의거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장은 학생이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특수 교육 검사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8.3.1 특수 교육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생이 규정 또는 행동 규범을 위반한 경우, 만약 징계 조치가 내려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학생은 주 및 연방 특수 교육법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 교육구는 학생이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아래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부모가 감독 또는 행정 직원 또는 교사에게 자녀에게 특수 교육이 필요함을 서면으로 밝힌 경우
 - (ii) 부모가 학생에 대한 검사를 요구한 경우
 - (iii) 학생의 교사 또는 다른 학교 관계자가 특수 교육실장 또는 기타 감독 직원에게 직접 학생의 행동 패턴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시한 경우

- b. 교육구는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ii)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관리를 거부한 경우
 - (iii) 학생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특수 교육 및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c. 교육구가 학생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하여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명시된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i)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징계 기간 중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ii)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은 학교 당국에서 결정한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8.4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의거한 행정적 결정이 학생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결정의 결과 연간 정학 처분 일수가 총 10 일 이상인 경우 또는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18.4.1 학교,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TEAM 의 관련자는 학생의 행위가 장애의 징후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징후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TEAM 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문제의 행위가 아동의 장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b)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IEP 비적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징후검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8.4.2 TEAM 이 학생의 행위가 장애의 징후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학생은 학부모/보호자 및 학교 관할구에서 학생에 대한 행동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서 배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 배치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TEAM 은 해당 주 및 연방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IEP, 배치 및 재배치에서 발견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징후 결정을 위한 TEAM 회의의 원인이 된 행동 발생 전에 학생에 대한 기능 행동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 기능 행동 평가가 포함되며, 행동 조정 계획의 수행, 또는 필요 시 기존의 행동 조정 계획의 검토, 수정이 포함됩니다.

18.4.3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가 아닌 것으로 TEAM 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 a. TEAM 은 정학 기간 중 학생에게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는 대체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 b. TEAM 은 필요시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당 대체안을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체안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 처분은 적용됩니다.

- c. 학부모/보호자가 매사추세츠 특수 교육 청원국(Massachusetts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Special Education Appeals)에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학생은 징계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공청회 심리관이 학생의 배치 변경을 명령하기 전까지 권리 및 책임 안내서에 의거한 행정 결정의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확인한 임시 대체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다.

18.4.4 배치 변경 또는 10 일 이상의 정확 처분이 내려지는 모든 경우,
학생에게는 적절한 무료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행동규범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배치 변경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안별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8.4.5 징계 조치를 결정한 행정 결정 후 10 수업일 이내에 아래 열거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 a. TEAM 은 학생의 기능 행동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위하여 소집되어야 합니다.
- b. TEAM 은 징계 조치가 내려진 행동 이전에 학생 행동 조정 계획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 c. TEAM 은 징계 조치가 내려진 행동 이전에 학생 행동 조정 계획이
이미 수행된 경우, 이를 검토, 수정해야 합니다.

18.4.6 TEAM 은 아래 열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대해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이 제공되는 한, 최대 45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보호자의 승인 없이도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a. 학교 또는 학교 활동에 무기를 가져오는 행위

- b. 학교에서 또는 학교 활동 중에 고의로 불법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 사용, 판매 또는 권유하는 행위
- c. 학교 또는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 중에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행위. “심각한 부상”이란 사망의 위협, 심한 육체적 고통, 장기적이고 분명한 상처, 신체의 일부 및 신체 기관의 기능 또는 정신 능력에 장기적인 손실 또는 약화를 가져오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18.4.7 학교는 해당 학생이 현재 배치 위치에 남아 있으면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45 수업일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학생을 이전하도록 매사추세츠 특수 교육 청원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0 퇴학 정책 – 무기, 약물 및 폭력

- 19.1 1993년에 제정된 매사추세츠 주 교육개혁법은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술,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하여 제 94,C 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무기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한 학생에 대하여 교장은 해당 학교 또는 학교 지구에서 퇴학을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교장, 교감, 교사, 교사 보조 또는 기타 교직원을 폭행한 학생에 대해서 교장은 해당 학교 또는 학교 지구에서 퇴학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학생의 위험 무기 소지, 규제 약물 소지 및 교직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 적용됩니다.

19.2 무기

무기가 사용된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

무기를 소지하고 등교하거나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 중에 무기를 사용하거나, 사물함, 호주머니, 교내에서, 버스에서 또는 방과후 활동 중에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은 심각한 위반 행위로서 학교 규정에 배치됩니다. **또한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무기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a. 타인을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소지 및 사용하는 무기 등 법적으로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포함한 **"법적으로 위험한"** 무기는 위험한 무기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무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 BB 탄 총 및 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기
 - ii. 양날을 가진 칼, 자동 스프링 장치가 있어 손잡이에서 칼날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모든 종류의 자동 칼, 양날 단도 또는 단검
 - iii. 금속제 너클, 쌍절곤, 표창 또는 이와 유사한 던져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별 모양의 물체
 - iv. 곤봉, 입으로 부는 화살총
 - v. 금속 못, 침 또는 징이 박힌 완장, 기타 물질로 만든 유사한 장치
 - vi. 신경 가스, 최루 가스, 기타 다른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 vii. 폭발물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화약
 - viii.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 269 장, 제 10 조에 명시된 모든 무기
- b.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 269 장, 제 10 조에는 무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기타 금지 물품**.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금지된 물품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 i. 열쇠 체인, 칼, 제도용 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칼
 - ii. 모든 크기의 칼날
 - iii. 면도칼, 포장 커터
 - iv. 쇠사슬, 채찍,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금속 제품
- c. 위험하게 또는 위협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일반 제품**. 이러한 물건을 위험하게 또는 위협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정학 또는 퇴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주: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모든 종류의 장난감 무기 및 모형 무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압수되며, 이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교장 또는 교감이 정학 또는 퇴학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19.3 약물 남용

아래 약술한 정책은 Cambridge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행정 조치입니다. 아래 지침은 Cambridge 경찰국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의 수사로 인한 기타 법적 조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Cambridge 교육구 담당자가 위 위반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603 CMR 28.00,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 B 장, 기타 매사추세츠 주 규정에 따른 학생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술,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 제 94C 장에서 정의한 규제 약물을 소지한 것이 발각된 학생에게는 교장에 의해 학교 또는 학교 지구에서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9.4 약물 남용의 정의

- a. 규제 약물 또는 위험 물질의 현장 발견이란 학생이 이러한 물질을 사용, 발견 또는 압수된 현장에서 학생이 발견되었고, 해당 학생이 현장을 떠나려는 합당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b. 학교 내에서 학생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해있는 경우,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생을 간호사 또는 의사에게 보내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의료 또는 법률 관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c. 약물 또는 술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물 남용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보건 당국에 위탁됩니다.
- d. 교장은 재량에 의해 이러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전문 치료 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e.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통신 내용은 비밀로 취급됩니다.
- f.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에 대한 처리 절차
 - i. 다른 사람이 약물 또는 술을 복용하거나, 팔거나, 전시함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나려는 합당한 시도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3 일간의 정학 및 CASPAR 검사 프로그램에 참가 조치가 내려집니다.
 - ii. 학생이 약물 또는 술을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사용자와 동일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 g. 규제 약물의 소지란 학생이 학교 당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자신의 소지품에 또는 자신의 통제하에(즉 사물함 등에) 규제 약물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h. 규제 약물의 사용이란 학교 관할 지역 내에서 학생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예, 음주, 코카인, 마리화나, 알약 형태의 마약 복용) 또는 이에 취해 있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규제 약물의 사용에는 처방 약물의 승인 없는 사용 또는 남용이 포함됩니다.
- i. 약물의 배포란 이러한 약물을 금전 또는 기타의 것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약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 약물의 소지, 사용 및 배포는 퇴학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9.5 교직원에 대한 폭행/위협

학생이 교직원을 폭행, 구타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1) 의도적, 고의적으로 또는 결과에 개의치 않고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것을 협박하는 행위, (3) 상대방이 공격, 도발로 느끼거나 또는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을 충분히 알면서 타인에게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1) 10 일간의 정학 및 퇴학 공청회, (2) 형사 소송, (3) 경찰 신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교 구내 또는 체육 행사 등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교장, 교감, 교사, 교사 보조 또는 기타 교직원을 폭행한 학생에 대해서 교장은 해당 학교 또는 학교 지구에서 퇴학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19.6 절차

19.6.1 초등학교 K-8. 학생이 법적인 위험 무기 또는 기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또는 학교 구내, 학교 관련 행사 등에서 위협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직원을 폭행, 위협, 구타하거나, 교직원을 폭행하는 경우, 또는 금지 약물을 소지, 배포 또는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중대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 a. 관련 직원은 교장 또는 교감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 b. 교장은 다음 사람들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i. 안전 보안 국장
 - ii. 부모 또는 보호자에 유선 통지 후 서신 우송, 필요 시 배달 증명 우편 발송
 - iii. 최고 운영 책임자
- c. 안전 보안 국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사고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 d. 학생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15.0 장에 의거하여 학교 구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e. 법률 위반 시 안전 보안 국장은 Cambridge 경찰에 이를 통보하고 미들섹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필요 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f. 교장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15.0 및 16.0 에 의거하여 정학 공청회를 소집합니다.
- g. 학생의 무기 정책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교장은 아래와 같이 **학생의 학년에 따라 즉시 2~10 일 간의 정학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K - 1 학년 2 일

2 - 4 학년 4 일

5-6 학년 8 일
7-8 학년 10 일

- h. 정학 기간 동안 교장이 발견한 위반 사실이 정확한 경우, 교장은 공식적인 퇴학 공청회 개최 절차를 밟습니다. 퇴학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학교의 공청회에 참석을 통보합니다. 퇴학 공청회 통보는 영어 및 학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서에는 학생이 위반한 권리 및 책임 안내서의 해당 조항 및 위반 관련 사실, 학생이 공청회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거 및 증인을 내세울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통역사가 제공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가 아닌 것으로 TEAM 이 결론을 내린 후에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정학 기간 동안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 역시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19.6.2 공청회의 진행

교장이 피해자 또는 증인이 아닌 한, 공청회는 교장이 주관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감 또는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공정한 학교 행정 인력이 주관합니다. 공청회에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 필요 시 학생의 법률 자문, 그리고 기타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 및 학생이 요청한 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 a. 위반 사항. 공청회 심리관은 위반 사항을 공표하고 학생이 공표된 위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b. 증인. 만약 학생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환됩니다. 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공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i) 발사체의 탄도 증거 또는 약물 분석 등 전문가에 의한 증언의 경우, (ii) 증인이 학생이고,

해당 학생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판단하는 경우.

19.6.3 공청회 결과, 교장이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교장은 이 결정 및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에는 또한 학생이 퇴학 결정 통보를 받고 10 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의 제기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9.6.4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은 학생이 권리 및 책임 안내서의 항목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지고 학생이 타 학교 입학 신청한 경우, 퇴학 조치된 학교의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퇴학의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19.6.5 고등학교 9-12 학년. 학생이 법적인 위험 무기 또는 기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또는 학교 구내, 학교 관련 행사 등에서 위협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직원을 폭행, 위협, 구타하거나, 교직원을 폭행하는 경우, 또는 금지 약물을 소지, 배포 또는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중대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 a. 관련 직원은 교장 또는 교감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 b. 교장은 다음 사람들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i. 안전 보안 국장
 - ii. Cambridge Rindge and Latin School 의 교장
 - iii. 부모 또는 보호자에 유선 통지 후 서신 우송, 필요 시 배달 증명 우편 발송.

- c. 안전 보안 국장은 교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사고 보고서 사본 1 부를 교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수업일 종료 시까지 전달 합니다.
- d. 학생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15.0 장에 의거하여 학교 구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e. 법률 위반시 안전 보안 국장은 Cambridge 경찰에 이를 통보하고 미들섹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필요 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f. 교장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제 15.0 및 16.0 에 의거하여 정학 공청회를 소집합니다.
- g. 학생의 무기 정책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교장은 아래와 같이 **즉시 10 일 간의 정학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정학 조치서 사본은 최고 운영 책임자, 교장, 경비 및 상담 교사에게 전달됩니다.
- h. 정학 기간 동안 교장이 발견한 위반 사실이 정확한 경우, 교장은 공식적인 퇴학 공청회 개최 절차를 밟습니다. 퇴학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학교의 공청회에 참석을 통보합니다. 퇴학 공청회 통보는 영어 및 학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서에는 학생이 위반한 권리 및 책임 안내서의 해당 조항 및 위반 관련 사실, 학생이 공청회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거 및 증인을 내세울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통역사가 제공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가 아닌 것으로 TEAM 이 결론을 내린 후에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정학 기간 동안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 역시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19.6.6 공청회의 진행

교장이 피해자 또는 증인이 아닌 한, 공청회는 교장이 주관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감 또는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공정한 학교 행정 인력이 주관합니다. 공청회에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 학생이 요청한 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 a. 위반 사항. 공청회 심리관은 위반 사항을 공표하고 학생이 공표된 위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b. 증인. 만약 학생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환됩니다. 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청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i) 발사체의 탄도 증거 또는 약물 분석 등 전문가에 의한 증언의 경우, (ii) 증인이 학생이고, 해당 학생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 결과, 교장이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교장은 이 결정 및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청회 후에 교장은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고, 퇴학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밟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에는 또한 학생이 퇴학 결정 통보를 받고 10 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의 제기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19.6.7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은 학생이 권리 및 책임 안내서의 항목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0 **학교 밖에서 행위**

- 20.1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 71 장 37H½항에 따르면 교장은 중대한 위반으로 기소된 학생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소된 학생에 대하여 교장은 해당

행위가 학교에서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학생이 학교 내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학교의 안녕에 실질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7H½항에 따라 교장은 관련 범죄 또는 과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학생 또는 이를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이 학교 내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학교의 안녕에 실질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퇴학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가 아닌 것으로 TEAM 이 결론을 내린 후에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정학 기간 동안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 역시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20.2 다음은 M.G.L.c. 71, §37H½에 의거하여 무기 정학 또는 퇴학 공청회의 절차입니다.

a. 10 일 이하의 정학 기간 동안 교장이 해당 위반 사실의 무기 정학 또는 퇴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학교의 공청회에 참석을 통보합니다. 퇴학 공청회 통보는 영어 및 학생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서에는 학생이 위반한 권리 및 책임 안내서의 해당 조항 및 위반 관련 사실, 학생이 공청회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거 및 증인을 내세울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통역사가 제공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가 아닌 것으로 TEAM 이 결론을 내린 후에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특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정학 기간 동안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 역시 제 18.0 장을 참조하십시오.

b. 공청회의 진행

교장이 피해자 또는 증인이 아닌 한, 공청회는 교장이 주관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감 또는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공정한 학교 행정 인력이 주관합니다. 공청회에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 필요 시 학생의 법률 자문, 그리고 기타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지정한 자 및 학생이 요청한 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 i. 위반 사항. 공청회 심리관은 위반 사항을 공표하고 학생이 공표된 위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ii. 증인. 만약 학생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환됩니다. 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공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 (i) 발사체의 탄도 증거 또는 약물 분석 등 전문가에 의한 증언의 경우, (ii) 증인이 학생이고, 해당 학생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판단하는 경우.
- c. 공청회 결과, 교장이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교장은 이 결정 및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에는 또한 학생이 퇴학 결정 통보를 받고 5 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의 제기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21.0 퇴학

아래 조항들은 무기, 약물 및 폭력과 관련된 사항 (제 19.0 장) 및 M.G.L.c. 71, §37H½ 에 의거한 무기 정학 및 퇴학과 관련된 사항 (제 20.0 장)을 제외한 기타 모든 사항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21.1 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게 아래 명시한 (제 21.2 장)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학생을 퇴학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퇴학은 정규 교실 강의 및 학교 활동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합니다.

퇴학은 퇴학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가 발생한 마지막 학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학기 중에 퇴학 조치된 학생은 2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에 의해 퇴학 조치가 자동적으로 검토됩니다. 퇴학 조치된 학생은 그 행동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된 경우, 원상 복귀됩니다.

21.2 교장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 a. 학생이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b. 학생의 행위가 교육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중대하고,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
- c. 기타 모든 적절한 징계 대안이 시도되었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21.3 교장이 퇴학을 권고하는 경우, 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이를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영어뿐 아니라 학부모/보호자가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교장이 학생의 퇴학을 권고한다는 진술
- b. 권고되는 퇴학 기간
- c. 학생이 위반한 학교 규정에 대한 설명
- d. 교장이 인지하고 있는 퇴학 권고의 원인이 된 사실의 상세한 기술

- e. 학생이 자신의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보호자,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배척시킬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권리, 기록부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공청회 전에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설명. 또한 학생 또는 그 부모/보호자는 회의를 녹음하고 진행 과정을 학부모/보호자의 모국어로 통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f. 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학생에 대해 임시 정학을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퇴학 공청회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있음을 기술. 이때 통지서는 제 21.4 장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g. 학생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특수 교육 평가를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술
- 21.4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 또는 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육체적 안전이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학생이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만 긴급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2.0 자퇴

- 22.1 어떠한 학생도 규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기간 동안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될 수 없습니다. 단 학생이 전염병 또는 기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면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되며, 해당 학생은 귀가 조치됩니다.
- 22.2 16 세 이상의 학생이 자의에 의해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학생이 등교를 중단한 후 7 일 이내에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모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통지서를 발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영구히 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와 면담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22.3 자퇴 면담. 필요시 이 통지서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면담의 목적은 자퇴의 사유, 학생의 기록 및 향후 교육 및 취업 계획 등을 검토하고 학생이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 자퇴를 결정했으며, 어떠한 학교 관리자 또는 직원의 강제 또는 압력도 작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22.4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10 수업일 이내에 자퇴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자퇴를 허용한다는 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 22.5 이 항목은 향후 교육을 다시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영구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21 번째 생일 전에 교장에게 재입학 상담을 위한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다음 학기 시작 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22.6 교장 또는 교감은 주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퇴학, 배제, 질병, 자퇴,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1 개월 이상 학교를 떠난 모든 학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이름, 나이, 인종, 성별, 주소, 학년, 학교 출석을 중단한 날짜,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장 또는 교감은 1 개월 이상 학교를 떠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 및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3.0 권리의 박탈을 시정하기 위한 공청회에 대한 권리

- 23.1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본 조항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가 학교 관리자 또는 직원에 의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교장 또는 기타 학교 관리자의 협조를 위한 비공식적인 수단 사용을 시도 후에도 불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부된 특정한

권리를 포함한 항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고,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해소를 위한 특정 요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조사 후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해당 위반 사항이 경미하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서면 이의서 수신 후 7 영업일 이내에 불만을 해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는 교장, 이의 제기 문서에 이름이 거명된 교육구의 직원들, 이의를 제기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a. 당사자 중 하나가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공청회 일자를 최대 5 수업일 동안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제기 접수 후 10 수업일 이내에 개최되는 회의 시간 및 장소
- b. 서면으로 작성된 이의 내역
- c. 증인의 이름을 포함한 위반 사실에 대한 상세 설명
- d. 요구된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
- e. 공청회에서 자신을 대변할 자를 선임하고 증인 및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 증인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각 당사자들의 권리 설명.

23.3 공청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a. 공청회는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 b. 공청회는 비공개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c.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d. 모든 당사자들이 학교 기록 및 기타 이의 제기와 관련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 모든 당사자들이 증인에 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 f. 모든 당사자들이 증인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g.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공청회 진행을 조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자문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공청회 진행에 있어서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자문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23.4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학생이 서면으로 작성된 이의 제기 서류에서 명시된 특정한 권리를 박탈당했는지 조사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권리의 박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권리의 박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23.5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Cambridge 공립학교의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정책”에 명시된 이의 제기 과정을 통하여 성, 인종, 피부색, 조상, 국적, 민족, 종교, 나이, 장애, 결혼 상태, 성 지향성 등 법률로서 보호되는 특성에 대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4.0 학생 지침서

Cambridge Rindge and Latin School 학생 지침서, 초등학교 학생 지침서 및 각 초등학교의 학생 지침서에 추가 행동 규범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학생 지침서를 통해 CRLS 및 초등학교 학생, 부모 및 교직원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중요한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A

DISTRICT / SCHOOL ADMINISTRATION / ADMINISTRATION

교육 법 및 규정

603 CMR 23.00

학생 기록부

조항:

23.01: 권리의 적용

23.02: 용어 정의

23.03: 자료의 수집: 제한사항 및 요건

23.04: 교직원의 개인 파일

23.05: 학생 기록부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23.06: 학생 기록부의 폐기

23.07: 학생 기록부에 대한 열람

23.08: 학생 기록부의 수정

23.09: 이의 제기

23.10: 통지

23.11: 감시

23.12: 분리 조항

최근 개정일: 2002년 5월 28일

최근 개정판 발효일: 2002년 6월 21일

23.01: 권리의 적용

603 CMR 23.00 은 학생 기록부의 기밀 유지, 검토, 변경 및 폐기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학교 시스템의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되었습니다.

603 CMR 23.00 은 아래의 목적에 대하여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1) 이 권리는 14 세 이상 또는 9 학년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학생이 14 세 미만이며 아직 9 학년이 되지 않은 경우 이 권리는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2) 학생의 연령이 14 세와 17 세 사이 또는 9 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 모두 또는 어느 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의 연령이 18 세 이상인 경우, 아래 명시된 내용을 전제로 학생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명시적으로 권리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부모에게 적용되는 603 CMR 23.00 의 권리 및 규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단, 학부모가 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권리를 요구하여 해당 교장 또는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교장 또는 교육감은 학부모의 서면 요구 사본을 학생 기록부에 보존해야 합니다. M.G.L.c.71, 제 34E 조에 의거하여 학부모는 학생의 연령과 관계 없이 학생 기록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603 CMR 23.01(1) 및 23.01(2)의 규정은 교육위원회가 603 CMR 23.00 의 규정을 14 세 미만 또는 아직 9 학년이 되지 않은 학생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23.02: 용어 정의

603 CMR 23.00 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열람이란 학생 기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토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인된 학교 관계자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a)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교육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 교육 상담 및 진단 기능을 가지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학교 관리자, 교사, 지도교사 및 기타 전문가. 교육위원회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은 인력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생 기록부 정보에 대한 열람만이 허용됩니다.

(b) 교육위원회에 의해 직접 고용되거나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비스 계약에 의해 고용되어 업무상 학생 기록부에 대한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학생 기록부를 열람해야 하는 행정 사무실 직원 및 사무직원. 여기에는 데이터 처리 장비 또는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시(microfiche) 제작 장비 작업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력에게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생 기록부 정보의 열람만이 허용됩니다.

(c) 학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팀

유자격 학생이란 14 세 이상 또는 9 학년 이상의 학생을 말합니다. 단, 교육위원회는 603 CMR 23.01(4)에 의거하여 603 CMR 23.00 에 명시된 권리 및 규정을 14 세 미만 또는 9 학년 미만의 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팀이란 M.G.L. c. 71B(St. 1972, c. 766) 및 603 CMR 28.00 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들을 평가하는 팀을 말합니다.

학부모란 학생의 부, 모, 보호자, 또는 법적으로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학생을 위하여 행위할 것을 승인받은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학생을 실제로 양육할 수 없는 학부모는 M.G.L. c. 71, § 34H 및 603 CMR 23.00 의 목적상 비양육 학부모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단기간이라도 학생과 함께 거주하거나 학생을 감독할 수 없는 학부모가 포함됩니다.

공개란 학생 기록부 상의 정보 전체 또는 일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누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학 연령의 장애 아동에 대한 정의는 M.G.L. c. 71B(St. 1972, c. 766) 및 603 CMR 28.00 에서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현장 학교 운영이사회, 직업 기술 학교 운영이사회, 교육 협력 이사회, M.G.L. c. 71B(Chapter 766)에 의해 승인된 사립학교 운영 위원회를 말합니다.

학생이란 공립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과거에 재학했던 자, 또는 교육위원회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3 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603 CMR 23.00 에서 이 용어는 교육위원회에 의한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기록부는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 기록 및 컴퓨터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여 물리적 형태 또는 특성과 상관없이 학생의 이름을 기반으로 또는 개별 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주(州) 공립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성적 증명서 및 임시기록부로 구성됩니다. 603 CMR 23.00 에서 이 용어는 보관 장소와 관계 없이 앞서 명시한 정보 및 자료를 말하며 단, 여기에는 603 CMR 23.04 에서 특별히 예외로 규정한 정보 및 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 기록부란 성적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 기록부에 담긴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교육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표준 시험 결과, 학급 순위(해당되는 경우), 특별활동, 그리고 교사, 상담교사 및 기타 교직원에 의한 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란 유자격 학생, 그 부모 및 승인된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자, 사립 또는 공립 기관, 기구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성적 증명서에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반영하고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들로 구성된 행정 기록이 포함됩니다. 이 자료는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생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학업 과정명, 등급(또는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와 동등한 개념), 학점, 이수 등급 및 이수 학년 등으로 제한됩니다.

23.03: 자료의 수집: 제한사항 및 요건

학생 기록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는 학생의 교육상의 필요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됩니다. 임시 기록부에 포함되는 정보 및 자료에는 정보 작성자의 이름, 서명 및 직위, 그리고 기록 작성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시 자료에 추가되는 표준 그룹 시험 결과에는 시험명, 발행인, 시험일자만 기재되면 됩니다.

23.04: 교직원의 개인 파일

학생 기록부라는 용어에는 교직원의 개인 파일에 있는 기록, 메모 및 기타 유사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정보는 승인된 학교 관계자 또는 제 삼자의 열람 또는 이들에 대한 공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학생, 부모 또는 기록 작성 임시 대리인과 공유될 수 있으나, 승인된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된 경우 603 CMR 23.00 의 전체 항목에 대하여 학생 기록부의 일부가 됩니다.

23.05: 학생 기록부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1) 학교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학생 기록부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교육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학교장의 감독하에 있지 않은 모든 학생 기록부들, 예를 들어 학교중앙 행정실에 저장되어 있는 종전 학생들의 성적증명서 또는 공립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취학 연령의 장애 아동에 대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장 및 교육감은 자신들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 기록부에 대해 물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승인된 학교 관계자에게 603 CMR 23.00 및 M.G.L. c. 71, § 34H 의 조항을 통지하고, 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모든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적 보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23.06: 학생 기록부의 폐기

(1) 학생의 성적 증명서는 학교청에서 보관하며, 해당 학생의 졸업, 전학 또는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자퇴한 60 년 후에 폐기됩니다.

(2)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교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임시 기록부를 검토하여 오류 정보, 시한이 경과한 정보 또는 관계가 없는 정보를 폐기하며, 이때 유자격 학생 및 그 부모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폐기 전에 해당 정보 또는 그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지 내용은 사본이 임시 기록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3) 603 CMR 23.00 의 효력 발생 이후 입학한 학생의 임시 기록부는 학생의 전학, 졸업,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자퇴한 늦어도 7 년 후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기록부의 폐기 예상일 및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유자격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통지는 해당 학생의 전학, 졸업, 자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603 CMR 23.10 에서 명시하는 정기적 정보와 더불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M.G.L. c 71, 제 87 항에 따라 공립 학교 재학 학생에 대해 이루어진 단체 지능 검사의 결과는 시험이 치러진 학년 마지막에 해당 학생의 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23.07: 학생 기록부에 대한 열람

(1) **열람표.** 각 학생 기록부에 대해 열람표를 학생 기록부의 일부로서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 기록부를 분리 보관하는 경우, 분리된 각 학생 기록부에 대해 열람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열람표에는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이름, 직위 및 서명, 정보를 입수한 자의 이름, 직위 및 제삼자의 경우 소속, 열람 일자, 열람한 기록부 부분, 열람 목적 등 학생 기록부를 열람한 모든 사람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생 기록부 정보를 삭제 또는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명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람표 작성 요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603 CMR 23.02(9)(a)에서 정의된 승인된 학교 관계자가 학생 기록부를 확인하는 경우

(b) 603 CMR 23.02(9)(b)에서 정의한 행정 사무실 직원 및 사무직원이 학생 기록부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이를 열람하는 경우

(c) 학교 간호사가 학생의 건강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

(2) **유자격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열람.**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는 603 CMR 23.07(5)에 따라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603 CMR 23.07(5)에 의거한 비양육 학부모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요구 후 열람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점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열람 요구가 접수되면 물리적 장소와 관계 없이 학생 기록부 전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a) 요구에 따라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학생 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정보의 사본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복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 인해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연방 법에 의한 기록부 검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b) 모든 학생은 연령과 관계 없이 M.G.L. c. 71, 제 34A 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성적 증명서 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c)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는 유자격 전문 학교 관계자를 만나 학생 기록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d)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제삼자에게 학생 기록부의 검토 또는 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삼자는 학생 기록부 열람을 허락 받기 위해서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서면 승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승인된 학교 관계자에 의한 열람.** 603 CMR 23.00 에 의거하여 승인된 학교 관계자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학생의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제삼자에 의한 열람.** 603 CMR 23.07(4)(a) 내지 23.07(4)(h)의 조항을 제외하고, 제삼자는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고지에 의한 특정한 서면 승인이 없이는 학생

기록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승인 시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는 제삼자에게 공개할 학생 기록부 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서 사본은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가 보관해야 하며, 복사본 1 부를 임시 기록부에 보관해야 합니다. 603 CMR 23.07(4)(a)에 설명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 기록부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서면 승인 없이는 해당 정보에 대해 다른 제삼자의 열람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삼자에게 공개됩니다.

(a) 학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출생지, 전공, 출석일, 운동부원들의 몸무게 및 키, 학급, 공식 활동 및 스포츠 참여, 학위, 수상, 고교 졸업 후 계획 등을 유자격 학생 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하여 학교는 603 CMR 23.07 에 의거하여 공개할 정보 유형에 대해 공고하고, 공고 후에 유자격 학생 및 학부모가 자신들의 사전 승인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603 CMR 23.10 에서 명시하는 정기적 정보에 포함됩니다.

(b) 학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응해야 하며, 단, 이에 응하기 전에 학교는 해당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이 명령 또는 영장에 대해 통지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 학교는 각각 M.G.L. c. 119, 제 51B, 57, 69 및 69A 항에 의거하여 사회보장부, 보호관찰소, 법원 또는 아동복지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d) 연방, 주(州), 지역 교육청 및 그 승인 대리인은 연방 및 주 법률 또는 프로그램의 감사, 평가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이 법률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부 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 및 승인된 대리인을 제외한 타 기관이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감사, 평가 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단위의 교육법 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개인 식별 자료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e) 학교는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건강 또는 안전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관계자에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M.G.L. c. 71, section 37L 및

M.G.L. c. 119, section 51A 의거한 지역 경찰서 및 사회보장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f) 법 집행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고된 학생 또는 종전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생 기록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아동의 기록과 관련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M.G.L. c. 22A, section 9 에 의거하여 해당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g) 학생이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승인된 학교 관계자는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승인 없이 학생의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전학 학생의 이전 학교는 학생 기록부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공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603 CMR 23.10 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정기적 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h) 학교 보건 관계자, 지역 및 주(州) 보건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면역 접종 기록을 포함한 학생 건강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비양육 학부모에 의한 열람 절차. M.G.L. c. 71, § 34H 의 요구에 따라 비양육 학부모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비양육 학부모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또는 양육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법적인 양육권이 거부된 부모.
2. 방문이 거부된 부모 또는 감독하의 방문을 명령 받은 부모.
3. 학생 또는 양육 부모에 대한 접근이 임시 또는 영구 보호 명령에 의해 제한된 부모. 단, 보호 명령(또는 보호 명령에 대한 개정 명령)이 학생 기록부에 포함된 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b) 열람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비양육 부모는 학생 기록부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매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요청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요청 학부모가 603 CMR 23.07(5)(a)에 의거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법원 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또는 학생 기록부를 비양육 부모에게 제시할 것을 특별히 명시한 법원 명령서 사본.
2. 상기 법원 명령서 또는 판결문이 효력이 있고 양육 부모 또는 양육 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또는 영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명시한 비양육 부모의 진술서.

(c) 비양육 부모는 학생에 대한 무감독 방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603 CMR 23.07(5)(a)에 명시된 열람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시한 서면 열람 요구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d) 이러한(최초 및 연간) 요구서를 수신하면 학교는 즉시 영어 및 양육 부모의 모국어로 작성된 배달증명 1 종 우편을 양육 부모에게 발송하고, 양육 부모가 603 CMR 23.07(5)(a)에 명시된 열람권에 대하여 비양육 부모가 자격이 없음을 명시한 서류를 교장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학교는 21 일 후에 비양육 부모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할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e) 학교는 비양육 부모에게 제공되는 학생 기록부에서 학생 및 양육 부모의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부에는 학생을 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f) G.L. c. 71, §34H 에 의거하여 정보의 배분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수신하면 학교는 비양육 부모에게 학생 기록부에 대한 열람 권한을 중지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23.08: 학생 기록부의 수정

(1)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는 정보, 의견, 자료 또는 기타 관련 서면 자료를 학생 기록부에 추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 기록부에 포함된 정보 중 평가팀에 의해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기타 정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팀이 포함시킨 정보는 평가팀 교육 계획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또는 평가팀 교육 계획이 거부된 경우 특별 교육 요청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삭제 또는 수정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삭제 또는 수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정보의 추가가 학생 기록부 내의 반대 내용을 설명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수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 또는 부모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b)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협의 후 또는 협의 요구가 없는 경우, 반대 의사 접수 후 1 주 이내에 결정사항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대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는 즉시 해당 결정 사항이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3.09: 이의 제기

(1) 603 CMR 23.00 에 포함된 조항과 관련하여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가 내린 결정 전부 또는 일부가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는 이의를 접수한 후 2 주 이내에(이의 제기인이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됨)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사유가 명시된 서면 결정서를 이의 제기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이의 제기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일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는 즉시 해당 결정 사항이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가 내린 결정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이의 제기자는 교육위원회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육위원회 회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4) 교육위원회는 이의 제기 접수 후 4 주 이내에(이의 제기자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됨) 이의 제기자가 제기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 학교는 이의 제기자가 제시한 문제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이의 제기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변자를 지정하고,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진행 절차를 녹음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공청회 후 2 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이의 제기가 교육위원회의 고용인의 진술에 대한 것일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5) 603 CMR 23.00 의 어떠한 조항도 603 CMR 23.0 또는 학생 기록부와 관련된 관할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23.10: 통지

(1) 학교는 매 학년 중 최소한 1 회 학생 및 학부모의 모국어로 아래 사항에 대한 정기적 정보 소식지를 작성 배포해야 합니다.

(a) 연간 실시할 표준 시험 프로그램 및 연구, 기타 학생에게서 수집할 정기적 정보

(b)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에 관한 603 CMR 23.00 의 일반 조항, 및 603 CMR 23.00 사본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정보

(2) M.G.L. c. 71A 에 의거하여 모국어 병용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학교 시스템에서 603 CMR 23.00 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수신하거나 학부모의 수신이 요구되는 모든 양식, 규정 또는 문서는 학생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모국어에 대해 학교 시스템은 모국어 병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23.11: 감시

교육부는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체 결정에 의해 603 CMR 23.00 의 준수를 위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교육위원회 및 관련된 특정 학교는 검토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23.12: 분리 조항

603 CMR 23.00 의 조항들은 각기 분리 적용되며, 법률 검토를 통하여 주 교육 위원회의 권한을 초과하는 조항이 발견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들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규제 근거:

603 CMR 23.00: M.G.L. c. 71, 34D, 34F.